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70
----------	-------

발의연월일 : 2025. 9. 23.

발 의 자 : 임의자 · 조지연 · 김기현
서지영 · 김형동 · 강승규
이인선 · 우재준 · 안상훈
이종배 · 김승수 · 권영세
박수민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 대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산업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생태계가 위협에 처한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취약산업에 속한 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약산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의 중소기업 중 지원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하여야 할 것임.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산업”이란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산업을 말한다.
2. “취약산업기업”이란 취약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금융지원”이란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신용보증, 무역보험 지원, 수출입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책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아. 그 밖에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거나 기업의 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취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취약산업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취약산업기업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연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 대외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취약산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취약산업금융지원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한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이하 “금융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산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 추이
3. 취약산업기업의 현황과 향후 추세
4.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약산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금융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책금융기관의 장, 취약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지원계획의 수립 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금융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취약산업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이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취약산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약산업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취약산업의 지정 요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2. 기업의 경영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이행
3.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기술·판로·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상담
4. 그 밖에 취약산업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받고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취약산업기업 지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고용 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3.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 등이 해소되어 기업 경영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취약산업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원방법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보증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산업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2. 취약산업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
3. 취약산업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경감 또는 보전
4. 취약산업기업의 무역보험 지원
5. 취약산업기업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6.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취약산업기업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